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문

□ 사생활 침해 (2026년 상반기 시정권고 43건, 전체의 11.3%)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인 사인(私人)의 초상, 성명, 개인 간 사적인 통신 내역, 기타 사적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와 관련한 내밀 정보 및 사생활을 공개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유명인의 가족은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도 논점과 무관한 유명인 가족의 초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도 등)

-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헌법」 제17조, 「언론중재법」 제5조제1항).
-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 범죄 묘사 (2026년 상반기 시정권고 20건, 전체의 5.3%)

- 범죄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의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경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인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범죄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경우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언론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별 금지 (2026년 상반기 시정권고 42건, 전체의 11.1%)

- 국적·나이·장애 등에 따른 부정적 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을 게재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 할 경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비록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도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부정의 의미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은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장애 차별 표현 시정권고 현황

- 주요 시정권고 표현 : 장애를 앓다, 병어리 냉가슴,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의 표현으로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
- 수용사례: 장애차별 ^①표현을 삭제 하거나 ^②유사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③기존 제목을 직관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검찰, 지적장애 앓는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	검찰,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
②	[칼럼] 외눈박이 사법부, 이럴 바엔 '배심원제'를 하자	[칼럼] 치우친 사법부, 이럴 바엔 '배심원제'를 하자
③	대전 석유제품 생산기업들 원료수급 불안에도 '병어리 냉가슴'	대전 석유제품 생산기업들 원료수급 불안에 '마음고생중'

- 자살자의 인적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거나, 자살자의 초상을 공개하는 보도는 자살자 및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정 이유를 자살 동기로 단정해 보도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장소, 자살 방법 등을 공개할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3.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 ②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 ‘극단적 선택’ 관련 시정권고

- **극단적 선택** :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유사한 처지의 독자들을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음
- **수용사례** :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 권장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21일 서천 장항읍 70대 남성 목 매 극단적 선택	21일 서천 장항읍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②	수원 아파트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 남편 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추정	수원 아파트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 남편 가족 살해 후 사망

□ 폭력 묘사 등 (2026년 상반기 시정권고 26건, 전체의 6.8%)

-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나 정당화 혹은 과도한 공포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충격·혐오감 (2026년 상반기 시정권고 4건, 전체의 1.1%)

-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비참한 장면을 기사화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충격적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여과 없이 게재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사와 광고의 구분 (2026년 상반기 시정권고 77건, 전체의 20.3%)

-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의료법 등의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를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 등에 게재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 주소 등의 정보를 함께 실어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기사 제목 (2026년 상반기 시정권고 2건, 전체의 0.5%)

- 기사 본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정권고 수용 사례 안내

2026년 주요 시정권고 결정사항에 대한 수용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보도 시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연번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사례1	유명 연예인의 조폭연루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사인(私人)인 해당 연예인 배우자의 성명, 초상을 공표	사인(私人)의 성명 삭제 및 초상 비식별(모자이크) 처리
사례2	유명 배우의 음주운전 전력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초상을 공표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로 교체
사례3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멤버가 전 배우자와 나눈 사적 통신내용을 공표	사적 통신 내용 이미지 삭제

□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이해가 안되네” 부산 돌려차기男의 반성문 공개에 모두 분노했다. (중략) 가해자 ○○○의 인적사항 (가해자 초상)¹ 이 름: ○○○(남, ○○세) 19○○년 ○○월 ○○일 생 직 업: ○○ 주 거: ○○○ 출생지: ○○시 ○○구 ○○동 키: ○○○cm, ○형, 건장한 체격, ○○ 문신 ○○○의 개인정보는 2023년 6월 3일 유튜브 ○○○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인적사항 중에는 그의 진짜 신분, 나이, 출생지, 전과 기록 등이 모두 동반됐다. 19○○년생인 ○○○는 해당 사건 이전에 이미 ○○건의 범죄로 기소된 바 있다. <u>범행 당시 그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u>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년 ○월 ○씨는 며칠 만에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됐다.	“이해가 안되네” 부산 돌려차기男의 반성문 공개에 모두 분노했다. (중략) 가해자는 누구? (가해자 초상) 이 름: ○○○(남, ○○세) 19○○년 ○○월 ○○일 생 직 업: ○○ 주 거: ○○○ 출생지: ○○시 ○○구 ○○동 키: ○○○cm, ○형, 건장한 체격, ○○ 문신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2023년 6월 3일 유튜브 ○○○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인적사항 중에는 그의 진짜 신분, 나이, 출생지, 전과 기록 등이 모두 동반됐다. 19○○년생인 <u>그</u>는 해당 사건 이전에 이미 ○○건의 범죄로 기소된 바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년 ○월 ○씨는 며칠 만에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됐다.

□ 제10조의2(차별 금지)

연번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사례1	정신장애 않는 친구 딸 성추행·신체 촬영 70대 징역 6년	정신장애 가진 친구 딸 성추행·신체 촬영 70대 징역 6년
사례2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꿀 먹은 병어리 인가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묵묵부답 인가
사례3	‘ 꿀 먹은 병어리 더니’ 때 늦게 공개토론 ... “기가 막혀”	‘ 침묵 ’하더니’ 때 늦게 공개토론 ... “기가 막혀”

□ 제14조(자살 보도)

연번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사례1	경산 일가족 5명 사망 사건...부검 결과 “40대 가장 목매 , 나머지 4명은 경부 압박 질식사”	경산 일가족 5명 사망 사건...부검 결과 “40대 가장 포함 전원 질식사” → 해당 표현 삭제
사례2	‘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극단 선택	‘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교도소서 숨진채 발견 → 해당 표현 수정
사례3	‘불법도박’이 부른 비극...진주 고교생 극단적 선택	진주 청소년 불법도박 증가세...SNS 노출이 확산 부추겨 → 해당 문구 삭제

□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제주 푸른바다와 한라산 한눈에 조망하는 ‘○○○ 요양병원’^[1] 개원 ○○○ 기자^[2] (중략) 의료계 명의 원로로 평가받는 ○○○, ○○○ 원장^[1] 등 포진 (중략) ○○○ 요양병원이 지난해 11월 제주 동쪽 ○○읍 ○○리^[2] 에서 개원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분 거리로, 남조 로 도로를 이용하면 서귀포에서 ○○시간 내 도착한다.^[2] (중략) 전경사진^[2]	제주 푸른바다와 한라산 한눈에 조망하는 ○○○ 요양병원 개원 ○○○ 기자 (중략) 의료계 명의 원로로 평가받는 ○○○, ○○○ 원장 등 포진 (중략) ○○○ 요양병원이 지난해 11월 제주 동쪽 ○○읍 ○○리에 서 개원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분 거리로, 남조 도로를 이용하면 서귀포에서 ○○시간 내 도착한다. (중략) 전경사진

□ 제21조(기사 제목)

-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 스스로 생 마감 결정 ...“극심한 우울증”	‘△△△♥’ ○○○, 동생 사망 후 ‘자발적 안락사’ 생 각 →날짜까지 정했다 “11월 18일” (“운명전쟁49”)